

CCTV 내부 관리계획

목 차

1. 총 칙	2p
- [설치] 목적	2p
2. CCTV 운영 및 관리	3p
-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3p
-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촬영범위	3~4p
-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4p
- 촬영시간, 보관기간, 저장장치, 열람장소, 삭제주기	4p
3.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5p
- 운영자의 금지행위	5p
- 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5p
-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6p
4. 보 칙	9p
 [별표 1] CCTV 열람 요청서	11p
[별표 2] CCTV 열람 결정통지서	12p
[별표 3]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13p
[별표 4] CCTV 정정·삭제 청구서	14p
[별표 5] CCTV 정정·삭제 결정통보서	15p
[별표 6] CCTV 설치, 운영 관리대장	16p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1.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설치목적)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사랑의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
- 2)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인학대 예방, 종사자의 인권침해 대응)
- 3)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 4) 사랑의요양원 외부 보안 (무단 출입 예방, 기타 범죄 예방 등)

제 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 5조 (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 대표 겸 시설장 이재홍

나. 운영(담당)자 : 성주하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 사회복지사, 간호과장 및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팀장 및 부팀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책임자가 지정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 운영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운영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

4.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5.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자료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6.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이수증을 보관하여야 함

제 6조 (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11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필수설치공간 : 공동거실 6대, 침실 68대, 현관 8대, 작업치료실 2대, 프로그램실 5대, 식당 2대, 엘리베이터 1대

2. 기타 22대 (건물외부 6대, 사무실 4대, 지하 1~3층 : 8대)

※ 침실의 경우,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출입구에 설치한다. (규격 : 가로 297mm, 세로 210mm)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 7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130만 화소)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및 녹화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 (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각 층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열람실 (영상관리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 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 8조 (운영자의 금지 행위)

-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 9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화상정보의 열람 가능사유
 -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열람요청 청구 시

- 보호자가 요청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열람의 장소는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별표 제 1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열람요청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열람의 일시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순서로 하지 아니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별표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 법 제33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요청 시 아래의 사항 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 제33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수급의 인권보호,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3)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열람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제33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제 3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1) 이용일자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 2) 파일명/형태/내용
 - 3) 이용목적/사유
 - 4)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 5) 담당자 성명 및 확인 서명
- ④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11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 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표 제 4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표 제 5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제 12조 (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 3 제3항 및 영 제14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CCTV 운영 장비(저장장치, 그 밖의 부대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모니터는 사무실 내부 등에 설치하는 가능하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화면 끄, 커튼 또는 가림막 설치 등)하여 지정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제13조 (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단,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사유]

- ◆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등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②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④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제14조 (장비관리)

-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표 제6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15조 (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별표 제 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표 제 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표 제 3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 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 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별표 제 4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표 제 5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대표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 . . . ~ ’ .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 부	잠금장 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 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